

UR 협상 전망과 한국 경제

崔洛均*

머리말

그동안 잠복해 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최근 국내외 경제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에서도 연일 UR협상의 진전 과정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여론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다.

UR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문은 UR이 지난 1986년 9월에 시작된 이래 벌써 몇 차례나 된다. 물론 그때마다 국내외 경제계의 반응은 컸었는데, 이번의 타결 임박설은 설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내 여론의 경우 UR 타결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UR이 타결되면 쌀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쌀시장 개방 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농민들이 이익 집단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초점이 된 측면도 있다. UR 타결에 따라 제조업 부문이 받는 영향은 농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이겠지만 결코 그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초

점을 맞추지 않고 UR 협상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또한 UR이 타결되면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UR 협상의 타결 전망

UR이 타결될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UR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UR은 GATT의 국제주의 이념의 퇴조,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 움직임 가속화라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작되었다. 더욱이 GATT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수출 자율 규제, 시장 질서 유지 협정 등 GATT 규율 밖에 비합리적인 보호주의 수단이 남용되는데 대해 GATT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자간 무역 협상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교역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GATT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GATT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작된 UR 협상은 지난 1986년 출범한 이래 지지 부진하게 진행되었다. 금년 들어와서도 다소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美國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 경제 전공

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7-8월만해도 공산품 분야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로 연내 타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EC간 농산물 협정(블레이어하우스 협정)의 재협상을 프랑스가 새롭게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급진전된 적도 있다.

UR의 향후 전망에 관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UR이 미국·EC의 의견 대립으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두번째로는 UR 협상이 각국의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부분 타결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세번째 가능성으로는 UR이 각국의 대립 분야에 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고 일괄 타결될 가능성을 들 수 있겠다.

UR 협상 타결 가능성 고조

현재로서는 UR가 파국을 맞는 첫번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미국과 EC간의 농산물 협상에서 상호 이견폭을 크게 좁히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C간 합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상 진전에 장애가 되어 왔던 프랑스도 한발 양보할 의사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협상 타결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농산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현재로서 UR 협상은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내 타결의 가능성이 높은 또다른 이유는 NAFTA법안이 최근 미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 법안의 미의회 통과가 UR 협상 전반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것

은 미국이 UR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 변화는 EC에게도 외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EC가 UR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UR이 무산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미국은 내년부터 발효되는 NAFTA를 배경으로 EC에 쌍무 협정 체결을 고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EC가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UR을 연내에 타결짓는 것보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 11월에 열린 APEC 지도자회의에서 UR의 연내 타결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UR이 연내에는 꼭 타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UR 연내 타결의 국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 경제계의 최근 변화 양상이 UR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 논의 내용

UR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경우 어떤 내용을 포괄하게 될 것인가? UR 협상은 크게 보아 시장 접근 분야 협상, 규범 제정 분야 협상과 제도 분야 협상의 3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 접근 분야 협상

우선 시장 접근 분야 협상은 관세 인하 및 양허 범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 분야 협상과,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위한 비관세 분야 협상이 있다. 또한 새롭게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교역을 다룰 서비스 일반협정의 마련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을 위한 서비스 분야 협상이 있게 된다.

우선 관세 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간 양자간 관세 인하 양허 협상은 88년 12월 몬트리올 각료 회의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 목표(86년 9월 관세율 기준 33% 인하) 달성을 위해 각국은 상호 관심 품목중 중요 품목에 대해 우선 고려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양자간 협상을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나, 개도국들은 대부분 그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2년 3월 그간 각국과의 양허 협상 결과를 토대로 관세 양허안을 GATT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안에 따르면, 그 내용은 총 9,044 개 품목(HS 10단위)중 7,389 개 품목을 양허(품목수 기준 82%)하기로 되어 있고, 양허 품목의 관세 인하율은 32% 수준(88년 수입액 가중 평균 기준)이다. 그 결과 양허 관세율 수준은 90년 평균 관세율 11.4%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에게 추가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EC에 의해 각기 제안되어 추진된 무세화, 관세 조화 협상은 미국·EC간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합의 실패로 그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93년 7월 6일 Quad 통상 장관 회담에서 무세화 부문의 8 개 품목 분야(전자, 철강, 건설 장비, 비철금속, 종이, 의료기기, 기구)와 관세 조화 부문의 화학 제품 분야 등에 대한 포괄 합의를 함에 따라 분야별 협상만 남게 되었다.

비관세 분야 협상은 수량 제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비관세 조치의 완화 내지 철폐를 목표로 협상 참여국간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관세 협상보다 우선 순위가 낮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92년 3월에 각국이 요청한 비관세 조치의 철폐와 관련, 수출입 수량 규제가 해제된 품목 중심으로 된 양허 계획(HS 6 단위 기준 178 개 품목)을 제출한 바 있다.

섬유 분야 협상은 현행 다자간 섬유 협정(MFA)에 근거한 국별 양자간 섬유 협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섬유 쿼타를 단계적으로 철폐시켜, 섬유류 수출입을 자유화시켜 나가기 위한 관련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다. 현재의 최종 협정 문안에서 섬유 쿼타를 향후 10년간 3 단계에 걸쳐 (3 개년: 12%, 4 개년: 17%, 3 개년: 18%) 자유화시키고, 전체 쿼타의 4%는 1단계 자유화 이전에 별도로 자유화시키고, 나머지 49%는 10년이 경과한 다음 첫째날 일시에 자유화시키게 되어 있다.

규범 제정 분야 협상

다음은 규범 제정 분야의 협상으로서, 현행 GATT 규범의 강화 및 명료화를 통해 GATT의 규율을 강화하고 GATT 규정의 자의적 해석 및 남용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다. 동 분야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 관세, 기술 장벽 등 동경라운드의 MTN(다자간 무역)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IMs) 협정 등 GATT 규범 관련 협상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반덤핑 분야를 살펴보면,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반덤핑 규정을 개선, 명료화하고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덤핑 마진의 산정, 피해 판정 기준의 명료화, 조사 절차의 강화 등 반덤핑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와 우회 덤핑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상계 관세 분야 협상은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련된 GATT 규율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보조금·상계 관세 협정 문안은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 상계 조치 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연구 보조금과 지역 개발 보조금만이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분야 협정안은 선진 수입국들이 엄격한 현행 GATT 제19조상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시행중인 수출자율 규제(VER) 또는 시장 질서 유지 협정(OMA) 등 회색 조치(Grey Area Measure)를 협정 타결후 4 년내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대해 일정 기간(세이프가드 조치 최초 발동 3 년간) 보상·보복을 면제함으로써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내용중의 하나는 세이프가드 조치시 선별적인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수량 규제시 예외적인 특정 수출국에 대해 쿼타를 조정·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쿼타 조정(Quota Modulation) 제도를 신설토록 한 점이다.

제도 분야 협상

제도 분야 협상은 특정 무역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다자간 무역 체제 전반에 관한 규범의 개선, 강화를 위해 92년 1월 13일 무역 협상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 다자간 무역 기구(MTO), GATT 기능 강화 분야를 통합하여 법제화 그룹으로 묶어서 논의해 왔다. 동 협상에서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가장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 기구 설립 협정 문안 및 통합 분쟁 해결 절차 문안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이견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92년 12월에 미국이 다자간 무역기구 협정안에 중요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MTO 협정 대신에 각료 회의 결정에 의한 UR 의정서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EC 등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UR 협상 타결의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UR 협상 의제는 그 영향의 직접성의 강도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우리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 制度와 慣行의 변경을 통해 우리 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제는 관세, 비관세, 섬유와 농산물,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한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은 MTN 협정, 보조금, 상계 관세, 지적 재산권,

세이프카드 등인데, 이들 의제는 그 성격상 제도나 관행의 변경을 통해,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세계 무역 환경의 개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의제별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하자.

관세 협상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참여국의 關稅 引下 效果인데, 그것은 ① 우리 교역 상대국의 관세 인하로 인한 우리 산업 상품의 輸出 增大 效果와 ② 우리의 관세 인하로 인한 우리의 輸入 增大 效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더우기 향후 관세 협상중의 무세화 협상이나 관세 조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재무부(1992)는 UR 발표후 3 년내에 주요 16 개 수출국에 대한 34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관세 협상

비관세 협상 그룹은 수량 제한을 포함한 모든 비관세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완화 및 철폐 내역은 교역 상대국간의 Request List, Offer List를 이용한 양허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개략적으로 볼 때 비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상당한 정도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

관세 조치로 보호를 받아온 국내 관련 부문의 선진화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비관세 조치가 완화되면 국내 취약 산업의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반덤핑 협정 협상

반덤핑 協定의 협상 목표는 기존의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여 첫째, 수입국의 자의에 의한 반덤핑 제소 남발을 지양하고 둘째, 수출국의 새로운 덤핑 관행(예컨대 우회 덤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반덤핑 協定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기대 효과로는 ① 반덤핑 규정의 강화로 우리 상품에 대해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가 줄어들 가능성 ② 현재 제소 중에 있는 우리 상품의 제소가 취소 혹은 철회될 가능성과 ③ 우리가 외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할 수 있는 국제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회 덤핑 규정 등의 신설로 우리 상품에 대한 추가 제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상계 관세 협상

補助金·相計 關稅 협상의 목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상계 관세 부과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상계 관세 부과는 보조금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협상은 사실상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쪽에 집중되고 있다. UR 협상에서는 보조금을 무역 왜곡

효과의 크기에 따라 금지 보조금, 상계 가능 보조금,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한 뒤 각각에 대한 판정 기준과 이에 대한 제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補助金·相計 關稅 협상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특정 보조금이 禁止 補助金에 해당되어 지급이 중단됨으로써 해당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 許容 補助金으로 간주되어 계속 지급되던 보조금이 관련국의 제소로 상계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어 相計 關稅 措置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③ 交易 相對國이 지급하던 보조금이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어 지급이 중단되고(교역 상대국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 이로 인해 우리 관련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국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상계 관세조치 발동 요건의 강화로 선진국의 상계조치의 남용이 방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대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보조금의 축소 운용으로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상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산업 정책 수행상 제약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계 조치의 우회방지 조항 신설로 해외 투자 활동이 저해되고, 기존 협정에 비해 개도국 우대 조치가 축소되는 점도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적 재산권 협상

지적 재산권 협상은 다음과 같은 8 개 부분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즉 ① 도서·문예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② 음반·방송·사업자·연출가 등의 권리에 관한 저작권접권, ③ 상표, ④ 포도주 등의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 ⑤ 의장권, ⑥ 기술적 발명에 관한 특허, ⑦ 반도체 칩 등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⑧ 영업 비밀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반도체 칩 등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와 ‘기술적 발명에 관한 특허’에 대한 것이다. 이는 배치 설계권이 반도체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거의 모든 공산품에 반도체 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반도체 칩 설계와 제조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치 설계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자체의 반도체 칩 설계와 제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로열티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도체 칩의 생산과 수출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업체의 수출 증대에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국내에서의 기술 개발 촉진 및 그 결과에 따르는 타국으로부터의 로열티 징수 증대 효

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수반될 것이다. 또한 선의의 반도체 구매자가 보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 통상법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의 회피도 가능할 것이다. 즉 권리자로부터 침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기 전에 선의로 구매한 반도체 칩을 사용하여 제조한 전자 제품은 자유롭게 유통,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세이프가드 협상

세이프가드 협상의 원래 목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개선에 있으며,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는데 그 규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세이프가드 措置 撤廢에 관한 규정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또 철폐 시한은 이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 8년 이내 혹은 개정 세이프가드 협정 발효 5년 이내중 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게 된다. 둘째로는 회색 무역 규제 조치 철폐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색 무역 규제 조치는 개정 세이프가드 협정이 발효되는 4년 이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따라서 VER, OMA 등 灰色 措置의 4년내 철폐로 해당 품목의 對선진국 수출이 증가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시 최초 3년간 보상이 면제되므로 한국은 수입 품목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쉽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수입 선진국도 보상 면제 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손쉽게 발동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합적인 효과는 우리나라에게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 부문 협상

다음으로 섬유 부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섬유 쿼타가 10년내에 철폐되면 주요 선진 수입국의 수출 환경 개선, 관세 인하, 수입 제한 조치 완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 쿼타 철폐로 쿼타 다량 보유국인 우리나라로서는 後發開途國에 의해 중저가 제품 수출 시장의 상당한 부분이 침식당할 우려도 크다고 하겠다.

무역 관련 투자 협정이 타결되면,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이다. 이 경우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일부 제한 조치의 금지로 해외 투자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협상

農產物 協商은 우선 예외없는 관세화 및 관세 인하와 최소 시장 접근 보장, 그리고 國內 補助 및 輸出 補助金の 감축이라는 중요한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민감한 쌀시장의 開放 問題가 포함되어 있다. 동 협상 타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확대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일부 부문(축산물, 과일류, 채소류, 특용작물 등)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억 5,000만 달러의 수출 증가(7년간)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또한 농업 구조 조정 시책 추진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가 촉진될 수도 있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農産物 輸入 開放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며 쌀 수입 증액도 6억 4,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등 수입 급증도 우려된다고 하겠다. 또한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로 인한 農家 所得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농가 소득 감소가 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중 쌀로 인한 피해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농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로 농업 구조 조정 사업 수행상 제약이 발생된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서비스 협상

마지막으로 서비스 협상 타결의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서비스 협상 타결로 각국 流通 市場이 개방된다면 미주, 동남아 지역으로의 해외 진출 증대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분야의 부분적인 개방의 확대 및 국내 제한 조치의 완화 등으로 내수시장이 침식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된다 하겠다.

맺음말

전통적인 국제 무역론은 자유 무역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 전체로는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산업별로 보면 이해 득실이 엇갈리게 된다. 이 경우에 손해보는 분야로의 소득 이전이 필요하게 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도 UR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는 좋은 영향과 아울러 나쁜 영향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영향만 받을 수 있도록 협상 분야를 골라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제 협상의 룰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어차피 협상 타결의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최대의 협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향후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외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